

建築行政 遺憾

李義求／本協會 理事，弘報·編纂委員長

정부의 경제정책중 특히 대건축관계 정책이 일관성없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인력과 자재 및 공사환경을 제대로 점검치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200만호 주택건설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신도시의 부실시공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당황한 당국은 주택이외의 대부분의 건축허가 자체를 몽땅 끊어버리는 조치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조치는 당국의 상황판단 및 정책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더욱기 악화된 여론에 몰려 급조된 대증처방적 발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물론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통화관리의 긴축운영과 겹쳐 과열된 건축경기를 진정시킨다는 궁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강하게 나타날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관성없는 빈번한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으로 밤낮으로 내집마련의 꿈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주택수요자들에게 기회축소 및 가격상승등의 불안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가 더해가고 있는데, 한술 더떠 일반건축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규제조치는 국민 재산권 행사의 억제등 많은 부작용이 유발됨은 물론, 특히 건축사업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년 상반기중에 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일반건축의 신축이 일시에 폴려 또다시 자재난, 인력난의 파동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로인하여 피해를 보는 당사자중의 하나가 또한 우리 건축사이다. 제한대상이 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이상 1년이상까지 소요되는데 경과조치도 없이 일시에 중단 조치를 한다면 그동안 준비해오던 건축사는 물론 건축주들에 대한 작으마한 배려라도 감안했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면 허가는 해주고 자재·인력의 수급능력을 감안한 착공지연을 설득력있게 유도한다던가 한두달의 말미라도 주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던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현행법에는 엄연히 건축사협회 및 건설협회 등 전문단체에 부분적으로 그 분야의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 건축사 또한 많은 악조건하에서도 정부시책에 충실하면서 이만큼 발전된 국가건설에 이바지 하여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싶다.

이와같이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전문단체들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풀어주고 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비민주적 전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화! 민주화! 귀가 아프게 들리는 이말은 적어도 우리 건설행정분야에서만은 요원한 단어인듯 하다.

이렇게 된 상황은 건축사 입장은 물론 일선건축행정 및 건축사회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어떻게하면 이들을 좀더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나하는 사고방식에 젖어있어서 창의성을 살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행정자세가 부재한 관료주의 행정발상에 기인한다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동감이 간다.

현행법 만으로도 확실하게 법대로
 시행 된다면은 그이상 무서운 법은 없으며 아무리
 강력하고 새로운 법을 수없이 만든다 해도 서로가 지키고 감독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오히려 처벌과 규제위주의 경직된
 현행법을 개선완화하여 건축의 창작성을 보호하여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시점이라 하겠다.

“감리는 설계의 연속된 작업이다”라는 말은 극히 기본적인 논리이다. 감리는 설계도를 작성한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의도대로, 또 도면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말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설계한 건축물의 시공 현장에 내가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고(무시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자기주장대로 감리권을 행사하는 비건축적인 행위를 흔히 볼 수 있고 제도화 되어가는 오늘의 상황이 심히 우려되며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 건축관계법은 제도적으로는 너무도 완벽하고 엄격하게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건축사법만 보아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자격과, 권리와, 업무능력을 주었으면서도 이를 차등제한 하는 모순된 법으로써 단독과 종합사무소로 구분 되어있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종합사무실만이 설계하고 감리도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계 및 감리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민·형사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장치되어 있다.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시공분야별로 일정이상의 자격증과 면허증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감독하도록 되어있고 각종 주자재의 실험의무조항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고발되고 처벌받겠끔 하는 조항도 엄연히 살아있다. 이렇듯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에는 이중·삼중으로 장치되어 있는 현행법을 찾아 바로잡아

운영할 생각은 않고 톡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개정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지난날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후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사생아법을 탄생시켜놓더니 이제 신도시 부실공사로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느닷없이 설계·감리 분리법이라는 괴상한 법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현행법 만으로도 확실하게 법대로 시행 된다면은 그이상 무서운 법은 없으며 아무리 강력하고 새로운 법을 수없이 만든다 해도 서로가 지키고 감독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오히려 처벌과 규제위주의 경직된 현행법을 개선완화하여 건축의 창작성을 보호하여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시점이라 하겠다.

세상에는 일상적인 상식이 존재하고, 법이며 행정도 상식에 근간을 두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바로 이것이 언필칭 “민주사회”가 아닌가?

당국은 하루빨리 허가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일시적인 대중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치유책을 세워주기 바라며 아울러 법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수도 있는 또 다른 시행착오의 “愚”를 범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건축사법개정에 임하여 건축인의 의견이 존중된 보다 차원높은 건축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